

다만, 종합부동산세가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배부기준에 있어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부문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, 이러한 수요가 특히 많아 심각한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중앙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배부기준을 현재의 “재정여건(80%), 지방세운영상황(15%), 보유세규모(5%)”에서 → “재정여건(50%), 사회복지(25%), 교육(20%), 보유세규모(5%)”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. 배부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,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.

**2)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를 실시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**

우선,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큰 ‘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’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<sup>4)</sup>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국고보조비율을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%씩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.

예시) 기초생활보장 사업 국고보조비율 차등 적용 예시 (서울지역)

종 전		→	개 선		
국 비	지방비		국 비	지방비	
50	50	60	40	* 인상보조를 적용	
		50	50		
		40	60	* 인하보조를 적용	

또한, 광역-기초간 부담비율에 있어서도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20%씩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.

예시) 기초생활보장 사업 광역-기초간 부담비율 차등 적용 예시 (서울지역)

종전 부담율		→	개선 부담율		
광역	기 초		광역	기 초	
50	50	70	30	* 인상보조를 적용	
		50	50		
		30	70	* 인하보조를 적용	

4) '06년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(11.5조원) 중 영유아보육(1.8조원)과 기초생활보장(7.0조원)이 76.5%를 차지하고 있다.